(주) 화승인더스트리	규 정	HSIS-A-03-01	입안부서	경영관리팀
	이사회규정		제정일자	2016. 5. 19
			페 이 지	1 / 9

승 인

개정번호	개 정 일 자	작 성	검 토			승 인
2	2026. 3. 20					
		/	/	/	/	/

회 람

성 명								
날 인								
회람일								
성 명								
날 인								
회람일								
성 명								
날 인								
회람일								

개정 이력 내용

개정 번호	개 정 일 자	개 정 내 용	확 인		
			확인일자	담 당	팀 장
0	2016. 5. 19	1) 제 정			
1	2019. 12. 1	3) 개 정 - 이사가 필요시 외부 전문인력 지원항목 추가			
2	2026. 3. 20	4) 개 정 - 사외이사 명칭 변경 (사외이사 → 독립이사)			

제 1 장 총 칙

1. 목적

이 규정은 ㈜화승인더스트리(이하 “회사”)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3. 권한

3.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, 회사 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3.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3.3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3.4 전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이사에 대해 관련 업무의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3.5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도는 피고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2 장 구 성

4. 구성

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며,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독립이사를 포함한다.

입안부서	경영관리팀	배 포 처	전 부 서

5. 의장

5.1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.

5.2 대표이사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부사장, 전무, 상무,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동 직급이 수인인 경우에는 해당 직급에서의 재임연수를 따져 최장 재임자로 결정한다.

제 3 장 회 의

6. 소집권자

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대표이사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 5.2항에 정한 순으로 이사회를 소집한다.

7. 소집절차

7.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늦어도 24 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, 전자문서, 모사전송방식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.

7.2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7.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8. 결의방법

8.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 397 조의 2 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제 398 조 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 등 법령 또는 정관에서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.

8.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도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,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8.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8.4 제 8.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9. 질서유지

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, 취소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,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. 이사회 의장의 명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부 의 사 항

10. 부의사항

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0.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10.1.1 주주총회의 소집

10.1.2 영업보고서 및 제무제표의 승인

10.1.3 정관의 변경

10.1.4 자본의 감소

10.1.5 주식의 소각

10.1.6 주식배당의 결의

10.1.7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, 분할합병

10.1.8 회사의 영업 전부 도는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, 임대, 경영위임 등

10.1.9 이사의 선임 및 해임

10.1.10 이사의 보수한도

10.1.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

10.1.12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출 및 해임

10.1.13 기타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주총회 부의 의안

10.2 주식에 관한 사항

10.2.1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

10.2.2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

10.2.3 주식액면미달

10.2.4 주식의 분할, 합병

10.2.5 주식의 포괄적 교환, 주식의 포괄적 이전

10.2.6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취소의 결정

10.3 사채에 관한 사항

10.3.1 일반사채의 발행

10.3.2 전환사채, 교환사채,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

10.3.3 신종사채의 발행

10.4 경영에 관한 사항

10.4.1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
10.4.2 상업 제 39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및 상법 제 542 조의 9 제 3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(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)

10.4.3 이사의 겸임 등

10.4.4 준비금의 자본전입

10.4.5 경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

10.4.6 이사회 운영규정 및 이사회 내 위원회(감사위원회, 경영위원회) 운영규정 제정, 개정 및 폐기

10.4.7 청구금액이 자기자본 100분의 5 이상인 소송에 대한 화해

10.4.8 투자에 관한 사항

(1) 자기자본의 10% 이상의 신규 시설투자, 시설 외 투자, 시설 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에 대한 결정

(2) 자기자본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의 철수에 대한 결정

(3)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% 이상의 유형자산 취득 혹은 처분에 대한 결정

(4) 자기자본의 5% 이상의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대한 결정

10.4.9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

(1) 자기자본의 10% 이상 금액에 해당하는 만기 1년 이내의 단기 자금의 차입에 대한 결정(기존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은 제외)

(2) 자기자본의 5% 이상 채무의 인수 또는 면제에 대한 결정

(3) 자기자본의 5% 이상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에 대한 결정(담보제공은 타인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, 채무보증에서 입찰, 계약, 하자, 차액보증 등의 이행보증과 납세보증은 제외함

(4) 자기자본의 5% 이상 금전대여(타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, 금전의 가지급, 금전 대여 도는 증권의 대여)에 대한 결정

10.4.10 영업 및 생산활동에 관한 사항

(1) 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%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의 중단 또는 정지, 거래중단 또는 제품의 수거나 파기 등에 대한 결정

(2) 직전 사업연도 말 매출액의 10% 이상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생산 활동의 중단 또는 폐업의 결정

10.4.11 기타 증권거래소 공시 등 외부기관 또는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의결 및 의사록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

10.4.12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

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11. 보고사항

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1.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 결과

11.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

11.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

12. 이사회 내 위원회

12.1 이사회는 10항에 기재된 사항 등 이사회의 부의 또는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으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. 이사회 운영규정과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이 같은 일자에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법령, 정관의 제한이나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결의가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.

12.2 이사회는 12.1항에 따른 이사회 결정을 위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12.2.1 경영위원회

12.2.2 감사위원회

12.2.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
12.3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한 결의사항에 대하여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2.3.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
12.3.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
12.3.3 상법 제 398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및 상법 제 542 조의 9 제 3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(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)

12.3.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
12.3.5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기

12.3.6 법령 또는 정관에서 주주총회, 이사회 등의 전속적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

12.4 이사가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통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 받을 수 있다.

13. 관계인의 출석
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14. 의사록
14.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14.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14.3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
14.4 회사는 14.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15. 간사
15.1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15.2 간사는 의장이 지정을 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16. 규정의 개폐
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
부 칙 (2019년 12월 1일 개정)

1. 시행일
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상장된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회사가 상장된 이후 기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조건이 정해진 이후에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 (2026년 3월 20일 개정)

1. 시행일
이 규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회사가 상장된 이후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은 회사가 상장된 이후 기타 관련 법률에서 정하

는 조건이 정해진 이후에 효력을 가진다.

2. 시행일

제4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